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 변경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83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 변경(안 제36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2. 28.

다.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 변경(안 제36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도서관자료·시설을 갖추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이 아닌 국립 공공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작은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군수·구청장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u>	제36조(등록 등) ① ----- ----- ----- ----- ----- ----- <u>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u>

계, <u>국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 ⑥ (생략)	<u>장관,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u> - -----<u>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1. <u>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2. <u>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u> 3. <u>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군수·구청장</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도서관법」 제4조1)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 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며, 공공도서관에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 포함됨.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²⁾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6조³⁾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3)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국립의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공립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설립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을 달리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제37조4)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서관법」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공공도서관 등록 제도]

설립주체	국립	공립	사립
등록관청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요건 ⁵⁾	- 사서 4명 이상 - 도서관 면적 330㎡ 이상 - 도서관 자료 1만점 이상		- 면적 264㎡ 이상 - 자료 3천점 이상
	※ 작은도서관의 경우 - 사서 1명 이상 - 도서관 면적 33㎡ 이상 - 도서관 자료 1천점 이상		※ 작은도서관의 경우 - 도서관 면적 33㎡ 이상 - 도서관 자료 1천점 이상
등록의무	의무		재량

○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실태 조사 및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관청과 등록관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⁶⁾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은도

5)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⁷⁾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국립·공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이 생활친화적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문화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등록의 책임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구미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므로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군·구에서 등록을 심의·관리할 경우

-
- 6)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7)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록 신청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지므로, 현행대로 광역 시·도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이 주민생활 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문화시설임을 고려할 때,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가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 고

작은도서관 설립 · 운영 현황

○ 설립주체별 작은도서관 통계('23.12.31. 기준)

전체 (개관수)	공립(1,587)		사립(5,288)				
	지자체직영	민간위탁	개인·단체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법인	아파트
6,875	1,044	543	1,437	300	1,110	284	2,157

○ 지역별 작은도서관 통계('23.12.31.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공립	416	115	52	64	58	50	38	9	219
사립	511	322	174	244	304	192	153	55	1,407
계	927	437	226	308	362	242	191	64	1,62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공립	43	27	80	158	59	102	90	7	1,587
사립	187	230	300	196	297	194	383	139	5,288
계	230	257	380	354	356	296	473	146	6,875